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 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도록 지정되어 있음. 이에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◇ 주요내용

○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확대

- 종합미용업 영업자가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 외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 화장·분장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위생교육도 이수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확대하여 지정함.